

<b>자료번호</b>	<b>A1-2007-0012</b>
<b>자료명</b>	<b>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</b>

<부록1> 설문지

[법률전문가용]

## 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

안녕하십니까?

저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현상 연구, 형사사법제도 연구 등 형사정책 수립에 기초와 근거가 되는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. 저희 기관의 본 조사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개혁과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형사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범조계와 법학계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. 사법제도 개혁과 형사정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사법 및 형사정책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.

아울러 귀하의 응답 내용은 단지 통계적 수치로만 처리되며, 어떤 경우에도 귀하의 개인 신상이 밝혀지는 일이 없을 것을 약속드립니다.

2007년 8월

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이 태 훈  
 담당 연구원 황 지 태  
 전화: 02) 3460-5124

<b>SQ1. 성 별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① 남성 <input type="checkbox"/> ② 여성	<b>응답자 성명</b>	
<b>SQ2. 응답자연령</b>	만 _____세	<input type="checkbox"/> ① 19세 이하(면접중단) <input type="checkbox"/> ② 20대 <input type="checkbox"/> ③ 30대 <input type="checkbox"/> ④ 40대 <input type="checkbox"/> ⑤ 50대 <input type="checkbox"/> ⑥ 60세 이상	
<b>SQ3. 직장소재지</b>	<input type="checkbox"/> ① 서울 <input type="checkbox"/> ② 부산 <input type="checkbox"/> ③ 대구 <input type="checkbox"/> ④ 인천 <input type="checkbox"/> ⑤ 광주 <input type="checkbox"/> ⑥ 대전 <input type="checkbox"/> ⑦ 울산 <input type="checkbox"/> ⑧ 경기 <input type="checkbox"/> ⑨ 강원 <input type="checkbox"/> ⑩ 충북 <input type="checkbox"/> ⑪ 충남 <input type="checkbox"/> ⑫ 전북 <input type="checkbox"/> ⑬ 전남 <input type="checkbox"/> ⑭ 경북 <input type="checkbox"/> ⑮ 경남		
<b>SQ4. 직 장 명</b>		전화번호	

**우선 사법개혁 내용 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.**

문1.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에 관한 아래의 내용 중 귀하의 생각에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내용을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십시오.

1순위\_\_\_\_\_, 2순위\_\_\_\_\_

- 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
- ② 사법제도를 합리화 효율화하는 것
- ③ 사법제도 진행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
- ④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
- ⑤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법률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
- ⑥ 선진국 수준의 사법제도를 마련하는 것
- ⑦ 법조계의 비리를 근절하고, 공정한 사법제도를 만드는 것
- ⑧ 보다 전문성을 갖춘 법조 인력을 양성하는 것

문2. 2007년도까지 입법화된 아래의 사법 개혁안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?

	사법개혁 관련 제도	매우 잘 안다 ①	잘 아는 편이다 ②	대강만 간략히 안다 ③	거의 모른다 ④	전혀 모른다 ⑤
문2-1	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제도					
문2-2	배심원(국민형사재판참여)제도					
문2-3	공판중심주의 확립					
문2-4	재정신청확대(검찰권사법통제)					
문2-5	인신구속제도					
문2-6	범죄피해자 보호 방안					
문2-7	국선변호제도					
문2-8	재판기록 공개 개선					
문2-9	법조윤리 확보 방안					

**☞ 다음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.**

문3. 다음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소정의 시험을 거쳐서 입학하는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을 졸업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주는 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여러 의견들입니다. 각 의견들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

	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 제도	그렇다 ①	아니다 ②	모름 ⑨
문3-1	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.			
문3-2	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률가 양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.			
문3-3	향후 외국계 법률회사들과의 경쟁에 도움이 될 것이다.			
문3-4	현재의 사법시험 제도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.			
문3-5	현재의 사법시험 제도보다 법조인의 능력과 자질이 더 떨어질 것이다.			
문3-6	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 등으로 비용이 더 들어, 법조인이 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다.			
문3-7	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은 너무 서두른 감이 있다.			

문4.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대학교 수, 학교당 입학 및 졸업 정원과 관련하여 귀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?

- ① 일정한 수로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
- ②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
- ③ 제한을 두지 말고,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
- ⑨ 모름/무응답

문5.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인원은 처음 배출하게 되는 2012년 경에 대략 몇 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? 약 \_\_\_\_\_명

문6. 귀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이외에 별도의 변호사 자격증 취득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- ① 반드시 필요하다
- ② 아마 필요할 것이다
- ③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
- ④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
- ⑨ 모름/무응답

문7. 향후 시행될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수기간이 3년으로 규정된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(법학부를 졸업한 사람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.)

- ① 찬성☞문8로
- ② 반대☞문7-1로
- ⑨ 모름/무응답

문7-1. 만약 반대하신다면, 법학전문대학원의 적정 이수기간은 몇 년이 적당합니까?

법학부를 졸업한 사람 기준으로 \_\_\_\_\_년

문8.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수기간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 혹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?

- ① 차이가 있어야 한다
- ② 차이가 있을 필요가 없다
- ⑨ 모름/무응답



문 14. '법조일원화제도'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사이의 연관성에 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.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	로스쿨제도와 법조일원화제도의 관계	그렇다 ①	아니다 ②	모름 ③
문14-1	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실시는 법조일원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.			
문14-2	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조일원화제도는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.			
문14-3	법조일원화 제도가 원활히 작용하게 된다면,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불필요하다.			

**다음은 재판과정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.**

문 15. 다음은 '배심원제도'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입니다. 각 의견들에 대해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

	배심원제도	그렇다 ①	아니다 ②	모름 ③
문15-1	'전관예우'나 '유전무죄 무전유죄'와 같은 범조계 비리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.			
문15-2	피의자 및 피해자의 인권이 보다 잘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.			
문15-3	범조문에만 얽매인 판결이 아니라, 다양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판결이 가능할 것이다.			
문15-4	배심원들이 학연, 지연 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.			
문15-5	배심원들이 금전적, 정치적 유혹이나 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이 높다.			
문15-6	배심원들이 사건의 진위보다는 여론의 향배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높다.			
문15-7	배심원제도 도입은 너무 서두른 감이 있다.			

문 16. 새로 실시될 '배심원 제도'에서는 배심원의 수를 판결할 사건의 경중에 따라 최대 9인부터 5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. 이런 배심원의 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- ① 너무 많다☞문16-1로
- ② 적절하다☞문17로
- ③ 너무 적다☞문16-1로
- ④ 모름/무응답☞문17로

문 16-1. 만약 너무 많거나,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면, 적절한 배심원의 수는 대강 몇 명 정도가 좋을가요? 최대 \_\_\_\_\_ 명부터 최소 \_\_\_\_\_ 까지

문 17. 배심원의 평결기준은 어떤 식이 좋을까요?

- ① 만장일치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 ② 3분의 2이상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 ③ 과반수  
 ④ 모름/무응답

문 18. 새로 시행될 '배심원제도'에서는 관할 법원의 법원장이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무작위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배심원 위촉 시 보다 엄격한 자격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- ① 더 엄격한 자격제한은 필요가 없다  
 ② 더 엄격한 자격제한이 필요하다  
 ④ 모름/무응답

문 19. 귀하는 형사재판에 한해 적용될 예정인 '배심원제도'가 향후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 같은 다른 분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- ① 찬성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 ② 반대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 ④ 모름/무응답

문 20. 앞으로 시행될 '배심원제도'가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?

- ①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 ② 아마 성공할 것이다  
 ③ 아마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 ④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 
 ④ 모름/무응답

**☞ 다음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사법개혁 관련 내용들에 관한 질문입니다.**

문 21. 귀하는 개정된 형사소송법 중 “공판중심주의의 법정심리절차 확립” 부분과 관련한 내용들이 공판중심주의의 기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십니까?

- ① 분명히 반영한 것이다☞문22로  
 ②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다☞문22로  
 ③ 별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☞문21-1로  
 ④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☞문21-1로  
 ④ 모름/무응답☞문22로

문 21-1. 개정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기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신다면,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 가지만 간략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.

---

문 22. 귀하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 능력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

-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인정  
 ②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조건(객관적 방법에 의한 진정 성립)수준에 따라 인정  
 ③ 피의자의 서명 및 날인만으로도 사실상 증거능력 인정  
 ④ 모름/무응답







문 32. 귀하는 종교나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'양심적 병역 거부자'들이 군 복무 대신에 일정 기간 사회복지요원으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'대체 복무제도'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- ① 적극찬성  ② 약간 찬성  
 ③ 약간 반대  ④ 절대 반대  
 ⑤ 모름/무응답

문 33.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한 편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.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?

- ① 사형제는 무조건 폐지되어야 한다  
 ② 가석방과 사면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'절대중신제'를 조건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 
 ③ 사형을 선고하되, 일정기간 지켜보아 감형할 기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 
 ④ 현재대로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 
 ⑤ 모름/무응답

☛ **끝으로 통계적 처리를 위해 개인적인 내용에 관해 몇가지 여쭙겠습니다.**

DQ1. 귀하가 현재 하고 계신 일은 무엇입니까?

- ① 판사  ② 검사  ③ 변호사  
 ④ 형법 관련 전공 교수  ⑤ 형법 관련이 아닌 법학 전공 교수

DQ1-1. 위의 직업에 종사하신 기간은 대강 몇 년이나 되십니까?

\_\_\_\_\_년

DQ2. 귀하는 평소에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가치관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, 아니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- ① 보수적이다  
 ② 비교적 보수적인 편이다  
 ③ 중도적이다  
 ④ 비교적 진보적이다  
 ⑤ 진보적이다

**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**